|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영개증 관련 징수관리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11호영개증 시범운행 중 반영한 관련 징수관리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유관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납세자가 이동주택, 기기설비, 철강구조물 등 자가생산 화물을 판매하고 동시에 건축, 설치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실시방법>(재세[2016]36호 문건 인쇄발행) 제40조에서 정한 복합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화물과 건축서비스의 매출액을 각각 계산하고, 서로 다른 세율 또는 징수율을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2. 건축기업과 발주사가 건축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수권 또는 제3자협의 등 방식으로 그룹 내 기타납세자(이하 “제3자”)에게 수권하여 발주사에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고, 제3자가 직접 발주사와 공사대금을 결산하는 경우, 제3자가 증치세를납부하고 발주사에증치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발주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한 건축기업은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발주사는 실제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발행하는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동일한 지급(地級) 행정구역범위 내에서 현(縣)(市, 區) 구역을 초과하여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현(縣)(市, 區) 구역을 초과하여 건축서비스를제공할 때의 증치세 징수관리 임시방법>(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17호 인쇄발행)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일반납세자가 엘리베이터판매와 동시에 설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설치서비스는갑공(甲供)공정(번역자주: 전부 또는 일부 설비, 재료, 동력을 공사 발주사에서 자가 구매하는 건축공사를 의미함)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방법을 선택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설치운행한 이후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기타현대서비스”를 기준으로 증치세를 납부한다.5. 납세자가 식물양생(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생활서비스”를 기준으로증치세를 납부한다. 6.카드발급기구, 정산기구와전표매입기구가은행카드 다(多)기구 자금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카드발급기구는 전표매입기구에서 수취한 카드발행은행서비스비용을 매출액으로 하여,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기구에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2) 정산기구는 카드발급기구 및 전표매입기구에서 수취한 네트워크서비스비용을 매출액으로 하여 카드발급기구가 지불한 네트워크서비스비용을 기준으로 카드발급기구에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표매입기구가 지불한 네트워크서비스비용을 기준으로 전표매입기구에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정산기구는 카드발급기구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카드발급은행서비스 비용을 전부 정산기구의 매출액을 계상하고,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표매입기구에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3) 전표매입기구는 상인에게서 수취한 전표매입 서비스비용을 매출액으로 하여,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인에게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7. 납세자가 2016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영업세 세종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보충 발행해야 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치세 보통계산서(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를 발행할 수 있다. 8. 세수처리 실명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세무기관이 이미 현장에서 법정대표인(업주, 책임자)의 실명정보를 수집한 납세자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신청하고 최고발행한도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관국세기관이 신청수리일로부터 2업무일 이내에 처리 완료해야 하며, 조건이 구비된 주관국세기관은 즉시 처리 완료한다. 즉시 처리 완료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행정허가 허가결정서>를 발급하여 송달하고,<세무행정허가 수리통지서>를 발행하지 않는다.9. 2017년 6월 1일부터 건축업을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자가발행 시범범위에 포함시킨다. 월간 매출액이 3만 위안을 초과하는(또는 분기 매출액이 9만 위안을 초과하는) 건축업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이하 ‘세금계산서 자가발행시범납세자’)가 건축서비스 제공, 화물 판매 또는 기타 증치세 과세행위가 발생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신규시스템을 통해자가 발행한다. 세금계산서 자가발행시범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지세기관에 대리발행을 신청해야 한다.세금계산서 자가발행 시범납세자는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납부세액을 규정된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국세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서를 작성할 때, 당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에 대해 3%와 5%의 징수율을 기준으로 각각 <증치세납세신고서>(소규모납세자 적용) 제2란과 제5란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세금불포함 매출액”의 “당기(本期)수” 상응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10. 2017년 7월 1일부터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7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와 기동차(자동차∙오토바이)판매 통일세금계산서는 발행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증치세 세금계산서 선택확인 플랫폼에 인증 또는 등록하여 확인하고, 아울러 규정된 신고납세기간 내에 주관국세기관에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해야 한다. 증치세일반 납세자가 취득한 2017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세관수입 증치세 전용납부서는 발급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주관국세기관에 <세관세금완납증빙공제목록>을 보고하여 비교대조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발행한 증치세 공제증빙은 현행 그대로<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공제증빙 공제기한 유관문제 조정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617호)에 따라 집행한다. 본 공고 제9조와 제10조를 제외하고 기타 조항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2017년4월20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明确营改增有关征管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11号　　为进一步明确营改增试点运行中反映的有关征管问题，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纳税人销售活动板房、机器设备、钢结构件等自产货物的同时提供建筑、安装服务，不属于《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财税〔2016〕36号文件印发）第四十条规定的混合销售，应分别核算货物和建筑服务的销售额，分别适用不同的税率或者征收率。　　二、建筑企业与发包方签订建筑合同后，以内部授权或者三方协议等方式，授权集团内其他纳税人（以下称“第三方”）为发包方提供建筑服务，并由第三方直接与发包方结算工程款的，由第三方缴纳增值税并向发包方开具增值税发票，与发包方签订建筑合同的建筑企业不缴纳增值税。发包方可凭实际提供建筑服务的纳税人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抵扣进项税额。　　三、纳税人在同一地级行政区范围内跨县（市、区）提供建筑服务，不适用《纳税人跨县（市、区）提供建筑服务增值税征收管理暂行办法》（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17号印发）。四、一般纳税人销售电梯的同时提供安装服务，其安装服务可以按照甲供工程选择适用简易计税方法计税。纳税人对安装运行后的电梯提供的维护保养服务，按照“其他现代服务”缴纳增值税。五、纳税人提供植物养护服务，按照“其他生活服务”缴纳增值税。　　六、发卡机构、清算机构和收单机构提供银行卡跨机构资金清算服务，按照以下规定执行：　　（一）发卡机构以其向收单机构收取的发卡行服务费为销售额，并按照此销售额向清算机构开具增值税发票。　　（二）清算机构以其向发卡机构、收单机构收取的网络服务费为销售额，并按照发卡机构支付的网络服务费向发卡机构开具增值税发票，按照收单机构支付的网络服务费向收单机构开具增值税发票。　　清算机构从发卡机构取得的增值税发票上记载的发卡行服务费，一并计入清算机构的销售额，并由清算机构按照此销售额向收单机构开具增值税发票。　　（三）收单机构以其向商户收取的收单服务费为销售额，并按照此销售额向商户开具增值税发票。　　七、纳税人2016年5月1日前发生的营业税涉税业务，需要补开发票的，可于2017年12月31日前开具增值税普通发票（税务总局另有规定的除外）。　　八、实行实名办税的地区，已由税务机关现场采集法定代表人（业主、负责人）实名信息的纳税人，申请增值税专用发票最高开票限额不超过十万元的，主管国税机关应自受理申请之日起2个工作日内办结，有条件的主管国税机关即时办结。即时办结的，直接出具和送达《准予税务行政许可决定书》，不再出具《税务行政许可受理通知书》。　　九、自2017年6月1日起，将建筑业纳入增值税小规模纳税人自行开具增值税专用发票试点范围。月销售额超过3万元（或季销售额超过9万元）的建筑业增值税小规模纳税人（以下称“自开发票试点纳税人”）提供建筑服务、销售货物或发生其他增值税应税行为，需要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通过增值税发票管理新系统自行开具。　　自开发票试点纳税人销售其取得的不动产，需要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仍须向地税机关申请代开。　　自开发票试点纳税人所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应缴纳的税款，应在规定的纳税申报期内，向主管国税机关申报纳税。在填写增值税纳税申报表时，应将当期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销售额，按照3%和5%的征收率，分别填写在《增值税纳税申报表》（小规模纳税人适用）第2栏和第5栏“税务机关代开的增值税专用发票不含税销售额”的“本期数”相应栏次中。　　十、自2017年7月1日起，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的2017年7月1日及以后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和机动车销售统一发票，应自开具之日起360日内认证或登录增值税发票选择确认平台进行确认，并在规定的纳税申报期内，向主管国税机关申报抵扣进项税额。　　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的2017年7月1日及以后开具的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应自开具之日起360日内向主管国税机关报送《海关完税凭证抵扣清单》，申请稽核比对。　　纳税人取得的2017年6月30日前开具的增值税扣税凭证，仍按《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增值税扣税凭证抵扣期限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617号）执行。　　除本公告第九条和第十条以外，其他条款自2017年5月1日起施行。此前已发生未处理的事项，按照本公告规定执行。　　特此公告。国家税务总局2017年4月20日　　　 　　 |